│ 제1장 생계 지원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l 맞축형 기초생활보장제도 l

-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일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8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2 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i	감면내역	지	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청 또는 복지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로 보고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상·히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각종 공공요금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 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제1장 생계 지원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대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내용

Ŧ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기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주지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7/1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4회*)
지원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단체 등 연계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S)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Ⅰ 가족희망드림 지원 Ⅰ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 내용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성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 (A)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Ⅰ 제1장 생계 지원 Ⅰ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Ⅰ 영구임대주택 공급 Ⅰ

-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 방법 입주 신청
- (S) 무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국민임대주택 공급 |

-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Ⅰ H마이홈(☎1600-1004)

| 행복주택 공급 |

- 이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50 E	입주 자격		
계층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독)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독)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독)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독)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계층	입주 자격		
계공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독)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공급비율
 - 일반형: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vhome.a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자주 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JH	자격	
구분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독)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 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소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촉(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78	자격			
구분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❷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⑤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101-111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 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3회계약가능)		

- ૭ 방법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무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 (지급기간) '22. 11.~'24. 12.
- 🙆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I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I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때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긴급 주거지원 |

-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②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 무의 LH마이홈(☎1600-1004)

│ 제1장 생계 지원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 주거급여(맞춤형급여) I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 🥟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치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워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 방법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나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 ❷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

-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 나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❷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I

- CHAPE CONTROLLER NO. 10 NO
- 🔎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

- 📯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knrec.energy.or.kr/home)

Ⅰ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Ⅰ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송)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 에너지바우처 |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화자, 희귀질화자, 중증난치질화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① 보장시설 수급자
-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 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Ⅰ

- 🙉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₂,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 ◎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 자주 하는 질문

- 환경성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 등 일정 조율과 진료 당일 병원에 동행하여 검사, 수납까지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신청·접수: 3~5월
-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6~9월
- · 실내환경 개선공사*: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어르신 등 진료 지원: 7~11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 🙉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² → 197kWh/m²)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 제1장 생계 지원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내집 마련 □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 의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 2자녀 가구 4억 원('23.2월 시행), 단독세대주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23.2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❷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⑤ 문의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보금자리론 |

- 대상 소득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 나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청
 - SC제일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 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 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23.2월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 🕭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버팀목 대출 보증 ┃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 내용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Ⅰ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Ⅰ

다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연납 허용)
- ❷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⑤ 문의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 다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의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 🙆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 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Ⅰ

- 여자 다상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화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화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 ②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 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 전세자금 보증 ┃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의 대상 이상 납입한 세대주
- 나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 🕭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 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제1장 생계 지원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 🙉 대상 🧼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Ⅰ

-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Ⅰ 제1장 생계 지원 Ⅰ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공급가격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1포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1포당 10,000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저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
- 🕲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p>

🎔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l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l

- 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②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에도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23.1.9.~1.13. 기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자동재충전 기간: 2023.1.16.~1.19.(자동재충전 완료 후 문자 안내)
- ※ 2023.2.1. 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 후, 수급자격이 있는데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재충전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3.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3.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 스포츠강좌이용권 |

- 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만 19~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1인당 매월 9만 5천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 조회에서 확인 가능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 🕲 방법 _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 내용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자주 하는 질문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1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1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 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예정)
- 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 방법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3.11.30.까지
 - ▶ 정기(1차): 기존대상자(54.000명)
 - 신청 : '23.1.2. 9시~1.31. 14시 선정 : '23.2.21. 14시
 - ▶ 추가(2차): 한부모가족 대상(6,000명)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 알려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 🤗 대상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와 만 13세 이하 자녀
- 대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 ⑤ 방법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으로 신청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평생교육바우처 |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내용 지원인원 57,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매년 1~2월 신청 접수)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처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2023년 개설(시작)하는 강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은 결제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웤되지 않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매년 1~2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NH농협은행(방문) 또는 NH농협카드(온라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